

전자금융거래약관 신규대비표

(주)지마켓

전자금융거래 약관 신규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
제 2 조 (정의) 1. '전자금융거래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,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),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 2.~5. (생략) 6. '전자금융거래서비스' 또는 '서비스'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4 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	제 2 조 (정의) 1. '전자금융거래'라 함은 <u>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(이하 "전자금융업무"라 한다)하고,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</u> 말합니다. 6. '전자금융거래서비스' 또는 '서비스'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<u>본 약관 제 4 조에 기재된 서비스를</u> 말합니다.
제 5 조 (거래내용의 확인) ⑤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G9 사이트의 경우 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빌딩 9 층 이메일 주소: g9@g9.co.kr 전화번호: 1644-5702 4. (삭제)	제 5 조 (거래내용의 확인) ⑤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,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</u>

제 8 조 (거래지시의 철회)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,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5 조 제 5 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법 또는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16 조, 제 20 조 및 제 26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	제 8 조 (거래지시의 철회)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,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5 조 제 5 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법 또는 <u>회사 홈페이지(www.gmarket.com) 등에서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</u>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16 조, 제 20 조 및 제 26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제 19 조 (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)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. ⑤ (신설)	제 19 조 (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) ③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<u>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</u> 통신판매업자에게 <u>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</u> ④<u>소비자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,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</u>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⑤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.
제 20 조 (거래지시의 철회)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	제 20 조 (거래지시의 철회)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22조 (정의 및 주요내용)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	제22조 (정의 및 주요내용)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

과 같습니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신설)	과 같습니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<u>'환급기준금액'이라 함은 이용자가 상품 권에서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.</u>
제23조 (접근매체의 관리)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	제23조 (접근매체의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</u>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24조 (환급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유상으로 충전 또는 전환한 금액의 60% 이상(1만원 이하는 80% 이상)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 4. (신설)	제24조 (환급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(좌동) 1. (생략) 2. (생략) 3. 유상으로 충전한 금액 또는 <u>'환급기준금액'의 60% 이상(1만원 이하는 80% 이상)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</u> 4. <u>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</u>
제 27 조 (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) ② 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	제 27 조 (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) ② ----- -----

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 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(구매)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회사 홈페이지(www.gmarket.com) 등의 안내를 통해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·충전 또는 현금상환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.
부칙 < 신 설 >	부칙 제 1 조 (적용일자) <u>이 약관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.</u>